유권자 정보 공식 안내서

캘리포니아 주 일반 선거 2004년 11월 2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추가 자료

등록하십시오
사안에 대해 알아 두십시오
투표하십시오

-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장기 부재자 투표자로 등록하십시오
  각 선거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으시려면 www.MyVoteCounts.org에 등록하십시오.
- **사안에 대해 알아본 뒤 투표하십시오.**
  투표용지에 기재된 주 전체 사안에 대한 설명서를 읽어보십시오.
-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투표일은 2004년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투표소는 투표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내용 정확성 공증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 장관인 본인 Kevin Shelly는 본 문서에 포함된 각종 법안이 2004년 11월 2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실시될 일반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 선거인에게 회부되며 본 안내서가 법에 의거해 정확히 작성됐음을 이에 증명합니다.

2004년 8월 28일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서 서명과 함께 주 관인을 날인해 이를 증명합니다.

Kevin Shelley

Kevin Shelley
Secretary of State

주 총무처 장관

유권자 여러분:

본 장은 "추가" 유권자 정보 안내서입니다. 본 장은 투표자료로 뒤늦게 제출돼 기존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포함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안내서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이번 선거는 최근 몇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투표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선거가 근소한 표차로 결정된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11월 2일 당일에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유권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올해, 유권자 여러분은 장기 부재자 투표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여러분은 각 선거에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MyVoteCounts.org**)를 방문하시거나 해당 지역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연락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부재자 투표 신청 마감일은 10월 26일입니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제때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본인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MY VOTE COUNTS

목차

		페이지
	유권자 권리장전	2
	투표 법안 개요	3
법안	**헌법 개정 법안**	
1A	지방정부 수입의 보호	4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65	지방정부 자금 세입. 주정부 명령.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10
	법률안 전문	16
	기억해야 할 중요 날짜	19
	투표소 위치를 잘 모르십니까?	20
	부재자 투표 절차	21

유권자 권리장전

1. 합법적으로 등록된 유권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습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유권자는 만 18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가석방 상태가 아니며 현 거주지 주소에 유권자로 등록된 미국 시민을 의미합니다.

2. 유권자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유권자는 임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유권자는 투표시간 마감 전에 투표소에 줄을 서 있는 경우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유권자는 외부의 압력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전에 실수한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잘못된 투표용지를 새 용지로 교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자는 선거일의 투표시간 마감 전에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잘못된 투표용지를 반송하면 새 투표용지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권자는 별도의 도움 없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유권자는 투표한 부재자 투표용지를 카운티 내의 어떤 선거구에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8. 유권자는 선거구에 특정 언어 사용자가 많은 경우 해당 언어로 작성된 선거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9. 유권자는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선거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구 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질문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거나 답변을 줄 수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계속되는 질문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방해되는 경우 선거구 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 공무원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불법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지방선거 관리공무원이나 주총무처 장관 사무실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리 행사를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선거 부정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주총무처 장관의 수신자 부담 보안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유권자 보호 신고전화
1-866-575-1558

주총무처 장관 | 캘리포니아 주

법안 1A

지방정부 수입의 보호

개요

법안 1A는 관할지역 재산세와 판매세 세수를 지방정부에 보장해 줌으로써 공공안전과 보건, 도서관, 공원, 기타 지역 서비스 등을 위한 재원확보가 가능합니다. 주지사가 예산 필요를 선포하고 주의회 의원 정족수 3분의 2가 이에 찬성할 경우에만 이 법안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지방정부 세수가 발생합니다. 이 지방정부 세수 증가로 인해 주 차원에서 비슷한 규모의 세수원 감소가 발생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선택 의미

Yes(예)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이 대폭 제한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No(아니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기존 주정부의 권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찬반론

찬성론

법안 1A는 화재와 긴급의료조치, 법집행, 건강서비스, 기타 핵심 사업 등에 쓰이는 지방정부의 지방세를 주가 전용할 수 없도록 양당간에 체결한 역사적 합의안입니다. 슈왈츠제네거 주지사와 소방관, 법집행관 등에 동참하십시오. **지방납세자와 공공안전을 보호합시다**. 법안 1A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반대론

법안 1A는 지방 정치인들이 별도의 감독 없이 예산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가 도시와 카운티의 재산세가 아닌 학교구역의 재산세를 영구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 의회의 지방판매세율 인하를 막기 위해 헌법에 지방판매세율을 못박아 놓았습니다.

추가정보 문의

찬성

지역 납세자와 공공안전 보호를 위해 법안 1A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인들 모임
1121 L Street, Suite 803
Sacramento, CA 95814
800-827-9086
info@yesonprop1A.com
www.yesonprop1A.com

반대

Carole Migden, 주평등보장위원회 의장
601 Van Ness Ave., #E3-611
San Francisco, CA 94102

법안 65

지방정부 자금, 세입. 주정부 명령.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개요

지방세 및 세수의 규모를 줄일 경우 유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결정된 이후 18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환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정부 명령 적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지방정부 세입이 발생합니다. 이 지방정부 세입 증가로 인해 주 차원에서 비슷한 규모의 세수원 감소가 발생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선택 의미

Yes(예)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이 대폭 제한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경우, 주는 주 광역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 없이 지방정부 재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No(아니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 주 광역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 없이 지방정부 재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찬반론

찬성론

반대론

우리는 법안 65를 유권자 표결에 상정해 놓았지만 지방납세자와 지역 공공안전 서비스를 위한 기금 확보에 대안이 되는 법안 1A를 지지합니다. 슈왈츠제네거 주지사와 경찰, 소방, 건강서비스, 지역정부 유력인사 등에 동참하십시오. 법안 1A에는 **찬성**표를, 법안 65에는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추가정보 문의

찬성

연락처 없음

반대

연락처 없음

법안

1A 지방정부 수입의 보호

공식 명칭 및 개요

법무부장관 작성

지방정부 수입의 보호

- 본 법안 1A는 공공안전과 보건, 도서관, 공원 및 기타 지역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금을 보호합니다.
- 주가 지방정부의 재산세 수입을 줄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주지사가 예산 필요를 선언하고 주 의원 정족수의 3분의 2 표결로 승인될 경우만 기금 유예가 허용됩니다. 유예된 기금은 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 지방 판매세 세수는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해당 지역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 주는 지방정부에 대한 의회 명령을 지원하거나 이 명령 시행을 유예해야 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 영향 추정에 관한 법률 분석가의 요약:

-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주의 권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방정부 세수 증가 규모가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이 지방정부 세수 증가로 인해 주 차원에서 비슷한 규모의 세수원 감소가 발생할 것입니다.

SCA 4 (법안 1A) 에 대한 주 의회 최종 표결 결과

하원:	찬성 64	반대 13
상원:	찬성 34	반대 5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지방정부 자금 조달

캘리포니아 주의 각 시와 카운티, 특별구역 등은 화재예방과 치안, 수자원, 도서관, 공원 및 여가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 세금과 수수료, 사용료, 주지원금과 연방지원금, 기타 재원 등으로 이들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개 항목의 세금은 지방정부의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 일반용도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아주 중요합니다. 재산세와 균일지방 판매세, 자동차 면허세 (VLF)가 그것입니다. 상당수 지방정부는 선택 지방판매세를 부과하며 이 세금에서 발생하는 세수입을 운송 등 특별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합니다. 표 1은 이들 주요 세수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주의 권한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기존 법령은 표 1에 명시된 세금에 대한 권한을 주의회에 부여합니다. 가령, 주의회는 세율과 과세 항목, 지방정부와 학교, 지역대학에 대한 세수입 분배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주는 이 권한을 지방서비스 지원과 주 비용 절감, 세금인하, 해당 지방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 시정, 지방재정 조정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해 왔습니다. 표 2는 과거 주의회가 취한 관련 조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정부 명령 비용 환급을 위한 조건

주헌법은 통상 주가 지방정부, 학교, 지역대학에 신규 지방 프로그램이나 고차원의 서비스를 "명령" 할 때 이에 대한 환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표 1

지방정부 세수

재산세

- 지방정부는 일반용도 세수로 재산세의 1%를 징수합니다.
- 2003 - 2004년 회계년도에 지방정부는 약 150억 달러의 재산세를 징수했습니다. (추가로 160억 달러의 재산세 수입이 학교와 지역대학에 할당됐습니다.)
- 각 지방정부에 배분된 재산세 수입 규모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대부분 1970년 중반에 발생한 지방기관의 재산세율 차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주의 재산세 배분법은 이 차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세(VLF)

- 자동차면허세는 주에 등록된 차량 가치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자동차면허세율은 지난 50년간 차량 가치의 2%이었습니다. 지난 1999년, 주의회는 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 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했으며 주는 이로 인한 각 시와 카운티의 세수손실분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2003-2004년에 자동차면허세 (차량 가치의 0.65% 비율로 책정)와 자동차면허세 보전으로 각 시와 카운티는 약 59억 달러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는 이 보전금액 일부에 대한 지급을 2006년으로 연기했습니다.
- 현행 법상, 대부분 자동차면허세 세수는 각 카운티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면허세 세수는 일반 용도로 각 시에 할당됩니다.

지방판매세(균일)

- 각 시와 카운티는 의복과 자동차, 외식비 등 일용재에 대해 구매가격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지방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브래들리-번스" 판매세라고도 합니다.
- 2003-2004년에 이 지방판매세는 1.25%세율로 부과돼 59억 달러가 징수됐습니다.
- 현행 법상, 판매세 세수의 80%는 판매 행위가 이뤄진 장소에 근거해 해당 지방정부에 배분됩니다. 만약 판매 행위가 시 반경안에서 이뤄진 경우 해당 시에, 판매행위가 불특정 지역에서 이뤄진 경우 판매세 세수는 카운티에 각각 배분됩니다. 지방판매세의 나머지 20%는 운송 용도로 각 카운티에 할당됩니다.
- 2004-2005년부터 지방정부는 주의 적자채권 보전에 충당되는 일부 지방판매세 세수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재산세를 징수합니다. 이는 2004년 3월 투표에서 승인된 사안입니다.

지방판매세 (선택)

- 각 시와 카운티는 지역 용도로 추가로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2003-2004년에 40개 관할세무당국은 이 판매세금을 부과해 31억 달러를 징수했습니다.
- 대부분 세수는 운송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주는 지역기관에 청문회 의제 공고를 요구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주는 지방정부와 학교, 지역대학 등에 이 의제공고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산문제로 주는 최근 몇년간 규정된 상당액의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는 전년주의 규정 프로그램 비용으로 이들 지역기관에 약 2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경우, 주는 주정부 명령 적용을 유예하거나 지방정부의 명령 준수 의무와 주의 환급 조치의 필요성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법안

지방세수 변경에 대한 주의회 권한 한도

본 법안은 지방정부 주요 세수원에 대한 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주 헌법을 수정한 것입니다. 본 법안에 따라 주는 다음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 ***지방판매세율 인하나 배분방식 변경.*** 본 법안은 주가 지방판매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정부의 판매

표 2

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는 주의 중대 조치들

지역서비스를 위한 기금 증대 지난 1979년 주는 재산세 수입을 학교와 지역대학에서 지방정부(각 시와 카운티, 특별 구역)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 13의 통과로 세수손실을 본 지방정부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행위는 제한받고 있으나 학교와 지역대학특별구의 재산세 손실분 보전을 위한 주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비용 삭감 지난 1992년과 1993년, 주는 재산세 수입을 지방정부에서 학교와 지역대학으로 이전했습니다. 2004년에 주는 이와 유사한 2년간 재산세 수입 이전조치(연간 13억 달러)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세수 자원과 주 비용의 감소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주는 또 주의 규정 환급 조치(대부분 2002년과 2003년, 2004년에 해당)와 자동차면허세 보전 조치(2003년, 아래 설명 참조) 등에 따른 지방정부에 대한 지급분을 연기함으로써 비용을 줄였습니다.

세금부과 삭감 지난 1999년부터 주는 세금감면조치에 따라 자동차면허세를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는 해당 시와 카운티의 세수손실분을 보전해 줬습니다.

특정 지방정부 지원기금에 대한 우려 시정 이전에 주는 지방 재산세를 적게 할당받는 시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면허세의 연간 할당규모를 자주 조정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구조조정 2004년에 주는 시와 카운티의 자동차면허세 보전분을 학교와 지역대학에서 이전한 재산세로 대체했습니다.

법안 1A의 전문 내용은 1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세율 부과 권한을 제한하거나 지방판매세 수입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령, 주는 시의 균일 또는 선택 판매세율을 인하하거나 판매세를 시에서 시가 속한 카운티로 이전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 ***지방정부의 재산세 수입을 학교나 지역대학 이전.*** 본 법안은 통상, 주가 2004년 11월 3일 발효되는 법에 의거해 특정 회계년도에 지방정부에 배분된 재산세 수입을 학교나 지역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법안은 카운티내 각 지방정부에 대한 재산세 수입 배분 방식 변경은 주의회 상하원 의원 정족수 3분의 2의 표결에 (다수결 표결대신)에 의해 승인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방세 수입을 특별구에서 다른 구로, 또는 시에서 카운티로 이전하는 주의 결정은 주의회 상하원 의원 정족수 3분의 2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본 법안은 2004년 3월 투표에서 승인된 주 예산적자관련 발행채권의 부채 상환용으로 책정된 지방판매세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각 시와 카운티에 배분된 재산세 수입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대체기금없이 자동차 면허세 축소.*** 주가 자동차 면허세율을 현 수준이하로 인하할 경우 본 법안은 주가 지방정부에 동등한 규모의 대체 세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주가 자동차 면허세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카운티의 건강 및 사회서비스 프로그램과 지역정부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판매세와 재산세 관련 이들 제한조치에 대해 두가지 주요 예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2008-2009년부터, 주는 학교와 지역대학에 지방정부 세수의 일정 부분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주지사가 주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세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하고, 주의회가 상하원 의원 정족수 3분의 2 표결로 이를 승인하고, 기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는 지방정부의 재산세 손실액을 3년내에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본 법안은 카운티내 각 지방정부가 지방판매세와 재산세 세수를 자율적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주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명령

본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수정해 주가 지방정부에 주정부 명령 이행 비용을 환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해당 년도에 주정부 명령 적용 법률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가 각 시와 카운티, 특별구의 각 명령 이행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명령 적용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 내용은 학교나 지역대학 관련 명령이나 근로자 권리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법안으로 각 시와 카운티, 특별구역의 신규 주정부 명령 이행 비용을 주가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본 법안은 종전에 주가 의무프로그램의 재정부담을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는 방식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조치를 명령으로 정의합니다. 현행 법에서는 이같은 재정책임 이전은 주정부 명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안 65의 관련 규정

법안 65는 지방정부 재정과 규정안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1A와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법안의 주요 유사점과 차이점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1A는 법안 1A와 법안 65가 승인되고 법안 1A가 더 많은 찬성표를 얻으면, 법안 65의 어떤 규정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파급효과

법안 1A 는 지방재정에 대한 주 권한을 축소합니다. 법안 1A는 아래의 설명대로, 향후 주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방과 주예산에 대한 장기적 파급효과

지방정부 세수 규모 확대와 안정화. 본 법안은 과거 지방세금에 영향을 미친 주의 조치 규모와 효과를 감안해 주가 향후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는 권한을 제한해 이에 따라 지방정부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가령, 주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재산세를 학교에 영구 이전하는 법안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본 법안은 지방정부 세수의 안정화와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방정부 세수 증가규모는

법률 분석가의 분석(계속)

법안 1A와 법안 65

법안 1A와 법안 65는 주와 지방정부 재정관련 3개 목표 달성을 위해 주 헌법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두 법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입니다.

지방정부 세수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주 정부 권한의 한도

2004-2005년 주예산에 대한 파급효과

- *법안 65의* 제한조치는 지난해 단행된 주 조치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04-2005년에 13억 달러의 재산세 이전과 2005-2006년에 추가이전을 골자로 한) 2004-2005년 주 예산안이 향후 치루어질 주광역선거에서 승인되지 못할 경우 적용될 수 없습니다.
- *법안 1A의* 제한조치는 미래의 주 조치에만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04년과 2005년에 13억 달러의 재산세 이전조치는 허용됩니다.

미래 주 예산에 대한 파급효과

- *법안 65*는 유권자 투표로 승인될 경우만 주가 회계년도에 주요 지방세 세수를 수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법안 1A*는 제한적이며 단기적인 지방재산세 이전조치를 제외하고는 이같은 수정 조치를 금지합니다. 주는 재산세 손실분을 3년 안에 해당 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각 지방정부에 세수를 재분배하는 주 정부 권한 축소

세수배분에 대한 파급효과

- *법안 65*는 통상 주가 재산세나 균일 지방판매세, 자동차 면허세 등에서 발생하는 각 지방정부의 세수를 줄이려고 할 경우 유권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안 1A*는 지방 판매세로부터 발생하는 지역정부 세수를 축소하는 주의 행위는 금지하지만 재산세와 자동차면허세, 기타 세금 등의 세수 배분변경 권한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1A에는 유권자 승인 조항은 없습니다.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정부

- *법안 65의* 제한조치는 각 시와 카운티, 특별구, 재개발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 *법안 1A의* 제한조치는 재개발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 조치없이 지방정부에 명령을 적용하는 주 정부 권한 제한

- *법안 65*는 주가 지방비용을 완전히 환급해주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와 학교, 지역대학 등에 주정부 명령 준수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법안 1A* 규정안은 학교와 지역대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가 각 연도에 규정이행 관련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주는 해당 연도에 지방정부의 규정 이행의무를 삭제해야 합니다.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주의 향후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과거 조치에 근거할 때 지방정부 세수 증가 규모는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지방정부 세수 증가로 인해 지역 프로그램에 지출 증가나 지역 비용이나 세금 등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주 프로그램 자원 감소 통상, 이번 조치가 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반대일 것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주 프로그램에 활용될 자원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원감소는 주 지출과 세금징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가령, 주는 예산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재산세를 더이상 전용할 수 없게 돼 주 의회는 주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세금 인상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주 지출 억제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과 함께 전체 예산파급효과는 연간 수십 달러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 세수에 대한 조정 자제 법안 1A는 특정 지방정부 지원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방세 세수를 재배분하거나 지방정부 재정을 재조정하는 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는 시와 카운티에 지방판매세 세수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조치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카운티내의 각 지방정부에 재산세를 재배분하는 조치는 주의회 상원과 하원 의원 정족수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수 재배분 조치는 지방정부 세수를 거의 변경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 프로그램과 주 환급 조치에 대한 파급효과

이 조치로 인해 주가 지역기관 비용을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게 돼 향후 주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역 프로그램이나 주와 지방정부 공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주의 대응조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주 대응조치에 따른 지역기관 환급 비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입안된 주의 조치를 검토한 결과, 장기적으로 주의 환급 비용 증가규모는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 1A의 전문 내용은 1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법안 1A

지방정부 수입의 보호

법안 1A에 대한 찬성론

법안 1A — 지방 납세자와 지방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안

법안 1A는 지방정부와 공공안전 지도층, 주의회, Arnold Schwarzenegger 공화당 주지사 등이 체결한 역사적인 초당파적 합의안이며 법안 문안은 민주당 Tom Torlakson 주 상원위원이 작성했습니다.

법안 1A는 화재예방과 긴급의료조치, 법집행, 건강서비스, 공원, 도서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 정부의 필요 기금을 주가 회수하거나 전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래 개인과 단체는 법안 1A에 대한 찬성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Schwarzenegger 주지사
- Steve Westly 주 최고회계책임자
- 캘리포니아 전문 소방관
- 캘리포니아 소방장 협회
- 캘리포니아 경찰장 협회
- 캘리포니아주 보안관 협회
- 캘리포니아 공공병원 및 건강체계 협회
- 캘리포니아시연맹
- 캘리포니아 특별구역협회
-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법안 1A는 주가 지방정부 재원을 회수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합니다.

주는 12년간 지방정부가 핵심 서비스 제공용으로 충당한 지방세금을 회수했고 지난 12년간 총 회수규모는 40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주는 주 예산이 흑자인 해에도 수십억 달러의 지방세금을 회수했습니다.

이같은 주의 지방세금 회수로 소방관과 치안담당관 수가 감소했고, 응급실 대기시간이 늘어났으며, 지방세와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법안 1A는 공공안전과 긴급의료서비스, 기타 지역서비스를 보호합니다.

지방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 제공에 상당규모의 예산을 할애합니다:

- 화재예방
- 긴급의료구조
- 치안
- 응급의료서비스
- 건강서비스
- 공원과 도서관

각 시와 카운티는 재개발기관의 기금을 사용해 도심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기관 세수증가분은 이미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법안 1A에 의한 추가적인 보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안 1A는 지방납세자를 보호하고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법안 1A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은 단지 기존 지방세금이 지역서비스에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본 법안은 *주가 회수하는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세금이나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법안 1A는 주의 비상예산에 탄력성을 제공하고 학교나 다른 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기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법안 1A는 지방기금의 *현재* 규모만 보호합니다. 법안 1A는 학교나 다른 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기금 규모를 줄이지 않습니다. 법안 1A 문안은 예산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중히 작성됐습니다. 법안 1A는 학교나 다른 주 프로그램 등의 지원기금이 필요할 경우—비상 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만—주가 지방정부 세수를 *차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법안 1A는 법안 65의 필요성을 대체하는 더 향상된 접근방법입니다.

법안 65는 역사적인 본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올해 초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법안 1A는 지역서비스와 지방세금 등의 보호에 더 유연하고 향상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 65 제안자 전원이 법안 1A를 지지하고 법안 65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Schwarzenegger 주지사와 Torlakson 주상원위원, 소방관, 경찰, 보안관, 긴급의료구조단, 건강서비스 지도층, 납세자, 기업 및 노동단체 지도층 등에 동참하십시오.

지방 납세자와 공공안전을 보호합시다. 법안 1A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법안 65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
MICHAEL WARREN, 소방장, *회장*
캘리포니아 소방장협회
ROBERT T. DOYLE 보안관, *회장*
캘리포니아주 보안관 협회

법안 1A 찬성론에 대한 반론

법안 1A는 최종단계에서 부실 예산안의 일부로 급조된 법안입니다.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안 1A는 지방정부를 보호하지만 주가 지역학교 지원용 재산세 세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육에 악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 내용이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포함됩니다!

법안 1A는 지방판매세율을 고정시켜 주의회의 세금 인하를 막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포함됩니다!

법안 1A는 주요 프로그램 운영을 위태롭게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재정난이 계속되는 한, 주예산 삭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 대학교육, 어린이 건강서비스, 노인층을 위한 프로그램, 공공안전 등에 책정된 지원기금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법안 1A는 지방 정치인이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별도 감독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법안 1A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CAROLE MIGDEN, *의장*
주평등보장위원회

본 페이지에 수록된 찬반론은 저자의 의견이며 공식기관에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법안 1A에 대한 반대론

우리는 지방정부의 무책임한 지출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방납세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법안 1A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주평등보장위원회 의장으로서 저는 상당수 정부 부서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안 1A는 지방정부가 예산책임이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지출에 대해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예산낭비에 대해서 나몰라라하는 처사입니다.

Stockton시가 도심 건설로 시 예산보유고를 고갈시키면서 한편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지원 명목으로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Stockton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Los Angeles시가 상수도세를 인상하면서 한편으로 불필요한 공보부문관련 계약에 수백만 달러를 낭비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된 것을 아십니까?

캘리포니아 주는 지방정부를 돕고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산감독과 책임 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는 법안 98에 의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8년, 캘리포니아주 교사들이 학교구역이 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법안 1A에는 예산책임 조항이 **없습니다**.

표결대상인 신설 학교 자금지원법안은 해당 기금이 유권자 의도를 존중해 사용되도록 별도 예산책임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1A에는 예산책임 조항이 **없습니다**.

물과 공원, 야생동물관련 캘리포니아 주 발행채권에는 엄격한 예산책임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 1A에는 이같은 예산책임 조항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심각한 예산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예산위기 극복에 어린이 건강서비스와 요양원 서비스 삭감, 대학입학율 감소 등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왜 지방 정치인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할 권한을 보장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병든 어린이도 받지 못하는 그런 보장을 지방 정치인들이 왜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예산책임 조항이 빠진 본 법안은 부결돼야 마땅합니다!

저와 동참해 법안 1A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CAROLE MIGDEN, *의장,*
주평등보장위원회

법안 1A 반대론에 대한 반론

법안 1A 반대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본 법안은 예산책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1A는 유권자가 감시할 수 있는 거주 지역에 세금이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정부의 예산책임을 확대합니다.

법안 1A는 비상예산의 경우을 제외하고 주가 지방정부 기금을 회수, 전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의 예산책임을 확대할 것입니다.

수 년간 주는 여러분의 세금을 회수하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법안 1A는 이 특권을 타파하고 주가 기존 예산한도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는 주가 각 시나 카운티 지도층보다 지방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여년간 시와 카운티는 긴축예산과 예산책임 확대, 지방의 우선서비스에 예산 지출 등을 실행해왔습니다.

법안 1A는 지방정부의 기금을 늘리지도 않으며 학교와 주 건강서비스, 기타 주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의 기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않습니다.

법안 1A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은 기존 지방세금을 보호합니다. 이들 지방 세금은 소방활동과 치안, 응급실 서비스, 긴급의료구조, 기타 필수서비스 등의 제공에 사용됩니다.

법안 1A 지지자들은 이제 Sacramento의 관행을 종식시키고 주의 지방정부 재원 회수와 전용 행위를 막아야 할 때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슈왈츠제너거 주지사와 소방관, 치안담당관, 긴급구조단, 납세자단체 등에 동참하십시오.

지방납세자와 공공안전서비스를 보호합시다. 법안 1A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TOM TORLAKSON *상원위원, 의장*
지방정부상원위원회
LOU PAULSON, *회장*
캘리포니아 전문소방관
CAM SANCHEZ, *회장*
캘리포니아경찰장협회

본 페이지에 수록된 찬반론은 저자의 의견이며 공식기관에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법안

65

지방정부 자금, 세입. 주정부 명령.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공식 명칭 및 개요

법무부장관 작성

지방정부 자금, 세입. 주정부 명령.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자동차 면허세 세수, 판매세 세수, 지방재산세 세수 등 지방정부의 세입을 2003년 1월 1일 수준에 근거해 삭감하는 법안은 유권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 주정부가 명령한 채무가 결정된 후 180일 이내에 주가 지방정부의 주정부 명령 이행비용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는 주정부 명령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공무원과 퇴직자에게 보호와 혜택, 고용지위 등을 제공 또는 수정하거나 지방정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 단체에 절차적이며 실체적 근로권리를 제공 또는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명령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 영향 추정에 관한 법률 분석가의 요약:

- 지방재정에 대한 주 권한에 상당한 변화가 전망됩니다. 지방정부 세수가 앞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정부 세수 증가는 주에 비슷한 규모의 세수원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지방정부 자금조달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5,000 여개 지방정부—시와 카운티, 특별구역, 재개발기관—가 있으며 이들 정부는 화재예방과 치안, 수자원, 도서관, 공원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 세금과 수수료, 사용료, 주지원금과 연방지원금, 기타 재원 등으로 이들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개 항목의 세금은 지방정부의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 일반용도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아주 중요합니다. 재산세와 지방 판매세, 자동차 면허세 (VLF)가 그것입니다. 표 1은 이들 주요 세수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주의 권한

캘리포니아주 헌법과 기존 법령은 표 1에 명시된 주요 3개 세금 항목에 대한 권한을 주의회에 부여합니다. 가령, 주의회는 세율과 과세 항목, 지방정부와 학교, 지역대학에 대한 세수입 분배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주는 이 권한을 지방서비스 지원과 주 비용 절감, 세금인하, 해당 지방정부 자금지원과 관련된 문제점 시정, 지방재정 조정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해 왔습니다. 표 2는 과거 주의회가 취한 관련 조치 내용과 2004년 여름에 주가 검토했던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분석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정부 명령 비용 환급을 위한 조건

주헌법은 통상 주가 지방정부, 학교, 지역대학 등에 신규 지방 프로그램이나 고차원의 서비스 이행을 "명령"할 때 이 이행 비용을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는 지역기관에 청문회 의제 공고를 요구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주는 지방정부와 학교, 지역대학 등에 이 의제 공고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산문제로 주는 최근 몇년간 규정된 상당액의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는 전년도 주 명령 프로그램 비용으로 이들 지역기관에 약 2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계속)

표1

주요 3개 지방정부 세금 항목

재산세

- 지방정부는 일반용도 세수로 재산세의 1%를 징수합니다.
- 2003-2004년 회계년도에 지방정부는 약 150억달러의 재산세를 징수했습니다. (추가로 160억 달러의 재산세 수입이 학교와 지역대학에 할당됐습니다.)
- 각 지방정부에 배분된 재산세 수입 규모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대부분 1970년 중반에 발생한 지방기관의 재산세율 차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주의 재산세 배분법은 이 차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세(VLF)

- 자동차 면허세는 주에 등록된 차량 가치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자동차면허세율은 지난 50년간 차량 가치의 2%이었습니다. 지난 1999년, 주의회는 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 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했으며 주는 이로 인해 각 시와 카운티의 세수손실분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2003-2004년에 자동차면허세 (차량 가치의 0.65% 비율로 책정)와 자동차면허세 보전으로 각 시와 카운티는 약 59억 달러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는 이 보전금액 일부에 대한 지급을 2006년으로 연기했습니다.
- 주법은 통상 자동차 면허세 수입의 4분의 3이 일반용도로 인구규모를 기반해 시와 카운티에 배분되고 나머지 자동차 면허세 수입은 건강과 사회서비스 목적을 위해 카운티에 배분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판매세

- 각 시와 카운티는 의복과 자동차, 외식비 등 일용재에 대해 구매가격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지방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2003-2004년에 이 지방판매세는 1.25%세율로 부과돼 59억 달러가 징수됐습니다
- 현행 법상, 판매세 세수의 80%는 판매 행위가 이뤄진 장소에 근거해 해당 지방정부에 배분됩니다. 만약 판매 행위가 시 반경안에서 이뤄진 경우 해당 시에, 판매행위가 불특정 지역에서 이뤄진 경우 판매세 세수는 카운티에 각각 배분됩니다. 지방판매세의 나머지 20%는 운송 용도로 각 카운티에 할당됩니다.
- 2004-2005년부터 지방정부는 주의 적자채권 보전에 충당되는 일부 지방판매세 세수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재산세를 징수합니다. 이는 2004년 3월 투표에서 승인된 사안입니다.

법안

주의회의 지방세수변경 권한 제한

본 법안은 재산세와 판매세, 자동차면허세 등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 세수를 변경하는 주의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수정합니다. 특히, 본 법안은 2003년 1월에 발효된 법에 근거해 지방정부 세수입을 지방정부가 통상 할당받는 세수입 수준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의회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주 유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표 2

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는 주의 중대 조치

과거 조치

지역서비스를 위한 자금 증대. 지난 1979년 주는 재산세 수입을 학교와 지역대학에서 지방정부(각 시와 카운티, 특별 구역)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 13의 통과로 세수손실을 본 지방정부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행위를 제한하였으나 학교와 지역대학특별구의 재산세 손실분 보전을 위한 주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비용감소. 지난 1992년과 1993년, 주는 재산세 수입을 지방정부에서 학교와 지역대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세수원과 주 비용의 감소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주는 또 주의 명령 환급 조치(대부분 2002년과 2003년에 해당)와 자동차면허세 보전 조치(2003년) 등에 따른 지방정부에 대한 지급분을 연기하는 편법으로 비용을 줄였습니다.

세금부과 삭감. 지난 1999년부터 주는 세금감면조치를 위해 자동차면허세를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는 해당 시와 카운티의 세수 손실분을 "보전"해 줬습니다.

특정 지방정부 지원자금에 대해 우려 시정. 이전에 주는 지방 재산세를 적게 할당받는 시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면허세의 연간 할당규모를 자주 조정했습니다.

2004년 7월 계류중인 법안

주 비용 삭감. 주는 2004-2005년과 2005-2006년, 13억 달러의 재산세를 지방정부에서 학교, 지역대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주는 또 지방정부에 대한 2004-2005년 명령 지급금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구조조정. 주는 시와 카운티의 자동차면허세 보전분을 학교와 지역대학으로부터 이전된 재산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법안 65의 전문 내용은 1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법률 분석가의 분석(계속)

가령, 본 법안은 다음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주 광역선거에서 유권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정부로부터 학교와 지역대학으로 재산세를 이전하는 경우.
- 시와 카운티간 판매세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 시판매세를 재산세 증가분으로 교환하는 행위
- 지방정부간 재산세 배분 방식을 수정하는 경우.

법안 65는 본 법안 규정에 따라 유권자 승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2003년 1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법의 적용은 유예됩니다. 유예된 법안은 차기 주광역선거에서 주 유권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법안은 유권자 승인 요구조건에 대해 다음의 두 개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상호 합의한 지방정부간에 재산세를 이전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둘째, 자동차 면허세를 동일한 금액의 대안 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은 지방재정 관련 두개의 기존 주 법률을 캘리포니아 헌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법률은 2006년 8월까지 주가 시와 카운티에 유예된 자동차면허세 보전금(12억 달러)을 지급할 것과 주의 적자관련 발행채권을 환수한 후 지방판매세율을 1.25%로 재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정부 명령

본 법안은 지방정부와 학교, 지역대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주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수정합니다. 특히, 주가 명령 (근로자 권리에 대한 명령은 제외) 이행 비용을 제때 환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기관은 주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안으로 지방기관의 신규 주 규정안 이행 비용을 주가 환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됩니다. 가령, 주가 주와 지방정부 공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방기관의 비용을 늘릴 경우, 본 법안은 지방정부 비용에 대한 주의 환급책임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산 파급효과

법안 65는 지방재정에 대한 주권한을 축소합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와 지방정부 예산에 대해 다음의 중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정부와 주정부 재정에 대한 장기적 파급효과

지방정부 세수 규모 확대와 안정화. 본 법안은 과거 지방세금에 영향을 미친 주의 일련의 조치 건수와 그 효과를 감안해 주가 향후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는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정부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가령, 지방정부 세수를 축소하는 의회법안은 본 법안이 규정한 유권자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회와 주지사가 유권자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방세수 축소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 법안은 지방정부 세수의 안정화와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방정부 세수 증가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주의 향후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과거 조치를 고려할 때 지방정부 세수 증가 규모는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지방정부 세수 증가로 인해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와 지역 비용 및 세금 등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주 프로그램 자원 감소. 통상, 이번 조치가 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반대*일 것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주 프로그램에 활용될 자원이 줄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원감소는 주 지출과 세금징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가령, 주유권자가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주가 지방정부 재산세를 사용하는 방안을 거부할 경우, 주의회는 주 예산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주 세금 인상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주 지출 억제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과 함께 전체 예산파급효과는 연간 수십 달러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계속)

각 지방정부 세수에 대한 조정 자제. 법안 65는 특정 지방정부 지원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방세 세수를 재배분하거나 지방정부 재정을 재조정하는 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는 시와 카운티에 지방판매세 세수 배분방식을 변경하거나 재산세를 수자원 구역에서 다른 특별구역으로 이전하는 법안은 주광역선거에서 유권자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유권자가 상기 재배분방식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나 주의회와 주지사가 유권자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세수 재배분 조치는 지방정부 세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지방 및 주 재정에 대한 가능한 즉각적 파급효과

본 분석은 2004-2005년 주예산안이 채택되기 전인 지난 7월 중반에 마련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의회는 13억 달러의 재산세를 2004-2005년과 2005-2006년에 지방정부에서 학교와 지역대학으로 이전하는 주지사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이전 조치로 지방정부 세수원은 2년간 매년 13억 달러 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이전 조치로 또한 주비용도 비슷한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 증가로 학교와 지역대학이 받는 주교육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본 분석 13, 법안 65 내용은 17페이지를 참조). 결국, 이 재산세 이전 방안은 차기 주광역선거 (2006년 3월 예정)에서 유권자 승인을 받을 때까지 유예될 것입니다. 유권자가 이전 방안을 승인할 경우, 이 방안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약 유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방안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며 위에서 설명된 예산파급효과가 정반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 지방정부는 2004-2005년과 2005-2006년에 13억 달러의 재산세 수입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이와 비슷한 규모의 증가 비용이 주에 발생할 것입니다.

지방 프로그램과 주 환급 조치에 대한 파급효과

이 조치로 인해 주가 지역기관 비용을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되어 향후 주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역 프로그램이나 주와 지방정부 공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주의 대응조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주 대응조치에 따른 지역기관 환급비용 파악은 불가능하지만,이전에 입안된 주의 조치를 검토한 결과, 장기적으로 주의 환급 비용 증가규모는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 65의 전문 내용은 1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법안 65

지방정부 자금, 세입. 주정부 명령.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법안 65에 대한 찬성론

본 법안에 대한 제기된 찬성론은 없습니다.

지방정부 자금, 세입. 주정부 명령.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법안 **65**

법안 65에 대한 반대론

법안 65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법안 1A 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각 지방정부의 연대모임은 화재예방과 치안, 긴급의료구조, 응급의료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지방세수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 65를 유권자 투표에 회부했습니다. 수년간, 주의원들은 필수 지방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지방정부 기금을 회수해갔습니다.

그러나, 법안 65가 투표에 회부된 기간에 주가 지방정부 재원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진적인 신규 법안인 법안 1A가 유권자 투표에 상정됐습니다. 법안 1A는 주요 지방서비스에 사용될 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유연하고 향상된 법안으로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와 민주 공화당 의원, 지방정부 및 공공안전 지도층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자료에 나오는 법안 1A에 대한 공식 찬성론과 이를 지지하는 각계 각층의 단체들을 참조하십시오.

법안 64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법안 1A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CHRIS MCKENZIE, *상무*
캘리포니아 시 연맹

CATHERINE SMITH, *상무*
캘리포니아 특별구역협회

STEVEN SZALAY, *상무*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법안 1A

2003 -2004년 정기회기 (결의안 133절, 2004년 제정법) 상원 헌법 수정안 4에 의해 제안된 본 수정안은 기존 조항을 수정하고 신규 조항을 추가해 캘리포니아 헌법 내용을 재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삭제할 조항은 ~~취소선~~으로 표시하고 신규 조항은 새로 추가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시합니다.

수정안 제XI조, 제XIII조, 제XIII B조

1 — 제XI조 15항이 수정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항. (a) *재정과세법 제2편 제5장 (제10701항 이하)* 자동차면허세법이나 후속 법에 의거해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자동~~ 세수 *중에서* 트레일러와 이동주택에 대한 부과비용이나 초과 징수비용, 합법적인 환급액 등을 제외한 *해당 차량의 시장가치의 0.65 %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면허세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법에 의거해 카운티의 시에~~ 할당될 것입니다.

~~(b) 본 항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뒤 7월 1일과 이후에 발효된 해당 법에 의거해 부과된 세금에 적용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면허세법이나 후속법에 명시되는 해당금액은 주재무부에 예치된 뒤 복지시설법 제9편 5장 6절 (제17600항 이하)이나 후속 법에 의거해 설립된 지방세수기금으로 전환되어 다른 법 규정이 없는 한, 각 시나 각 카운티 등에 배정될 것입니다.

(2) 다른 법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각 시와 카운티에 배정됩니다.

(b) 주의회가 제정하는 법령이 차량의 연간 등록세를 해당 차량의 시장가치의 0.65%이하로 줄일 경우, 주의회는 해당 등록세가 적용되는 각 회계년도에 등록세 감소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액만큼의 추가금액을 해당 회계년도에 제(a)호 규정에 의거해 예치해 배정하는 총세수액에 할당할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제(a)호 규정에 따른 세수와 동일한 비율과 동일한 용도로 각 시와 카운티에 배정될 것입니다.

2 — 제25.5 항이 제XIII 조에 추가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5항. (a) 2004년 11월 3일과 이후에, 주의회는 다음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 (A) (B)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카운티에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세수총액 비율을 2004년 11월 3일에 발효하는 법에 의거해 동 회계년도에 다른 카운티에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세수 총액 비율이하로 줄이기 위해 제 XIII A조 1항 (a)호 규정에 의거한 종가세 방식의 재산세 세수 배정 방식을 수정하는 행위. 본 내용의 목적에 의거해 "비율"은 (2)에 언급되는 재산세 세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B) (C)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2008-2009년 회계년도부터, 다음 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A), 규정 적용이 해당 회계년도에 유예될 수 있습니다:

(i) 주지사가 심각한 주 재정난으로 (A)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경우.

(ii) 주의회가 주위원 정족수의 3분의 2 표결로 호명투표에 의해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의거해 해당 회계년도에 (A) 적용 유예 내용을 포함하고 다른 규정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법안을 제정한 경우.

(iii) (ii) 조항에 명시된 법안의 발효시점이전에 종가세 방식의 지방기관 재산세 세수 수정에 따라 지방기관 법 규정에 의거한 이자 등을 포함한 세수총액 감소분을 해당 기관에 완전 환급해주는 법안이 제정된 경우. 이 완전 환급은 해당 수정조치가 적용되는 회계년도를 기점으로 3번째 회계년도 종료이전에 이행됩니다.

(C) (i) (A)적용은 (A)적용 유예 시점인 첫 회계년도를 기점으로 10년 연속 회계년도 기간 중 2회계년도 이상 유예될 수 없습니다.

(ii) (B)의 (iii)조항에 의거해 법령에 따른 완전 환급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A) 적용은 어떤 회계년도에도 유예될 수 없습니다.

(iii) 오는 2004년 11월 3일 당일 재정과세법 제10754.11항 규정에 의거해 각 시와 카운티에 지급되는 금액이 (B)의 (ii)조항에 명시된 유예 규정 발효시점 이전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A)적용은 어떤 회계년도에도 정지될 수 없습니다.

(iv) (A) 적용 유예로 인한 종가세 방식의 지방기관 재산세 총손실액은 (A)적용이 유예되는 회계년도 직전 회계년도에 카운티의 모든 지방기관에 할당됐던 종가세 방식의 지방기관 재산세 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A) (B)와 (C)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정과세법 제2편 제1.5장 (제7200항 이하)에 명시된 브래들리-번스 (Bradley-Burns) 균일지방세 및 사용세법의 규정에 의거해 시와 카운티가 세율을 부과하거나 동법에 의거해 발생하는 세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본 내용에 의한 제한은 2004년 11월 3일 당일 재정과세법 제7203.1 항의 정의에 의거해 세수교환기간의 종료로 인한 세율 변경에 따라 시나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의 유자격여부에 적용됩니다.

(B) 주의회는 명시된 브래들리-번스 균일지방세 및 사용세법의 규정에 의거해 부과된 사용세에서 발생하는 세수의 배분 방식을 법령에 의거해 변경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주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연방법 준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C) 주의회는 법령에 의거해 카운티내 한 개 이상의 특정 지역기관의 최고책임자 승인하에 브래들리-번스 균일지방세 및 사용세법의 규정에 의거한 세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와 종가세 방식의 재산세 할당액을 교환하는 계약을 이들 기관이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에 의거한 부과세율에서 발생한 세수를 교환할 경우, 이 세수 발생을 가져온 기존 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문제는 유권자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위의 본문 (2) (C)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호명투표로 주 의원 정족수 3분의 2 표결로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의거해 각 카운티의 지역기관에 할당되는 종가세 방식의 재산세 세수비율을 변경하는 행위.

(4) 브래들리-번스 균일지방세 및 사용세법에 의거한 지방판매세와 사용세법에 의거해 2004년 11월 3일 당일 재정과세법 제7203.1항에 따라 시와 카운티가 판매세율과 사용세율을 부과하는 권한을 재정과세법에 명시된 세수교환기간을 초과해 연장할 경우.

(5) (4)에 명시된 세율 관련 권한이 유예되는 기간에 2004년 11월 3일 당일 재정과세법 97.68항에 규정된 시와 카운티 지급을 축소하는 경우.

(6) 거래 및 사용세법 (재정과세법 2편 1.6장 (제7251항 이하))의 규정에 의거해 거래 및 사용세율을 부과하는 지방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2004년 11월 3일 당일 법안에 의거해 부과되는 거래 및 사용세율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를 배분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b) 본 항의 목적에 의거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 "종가세 방식에 의해 부과되는 재산세 세수" 는 법령에 의해 분류되는 본 세수에 상관없이, 제XIII A조 1항 (a)호 규정에 의거해 카운티가 징수하는 세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수를 의미합니다.

(2) "지방기관"은 2004년 11월 3일 당일 재정과세법 제95항에 명시된 의미와 동일합니다.

3 — 제XIII B 조 제6항이 수정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항. *(a)* 주의회나 주 기관이 지방기관에 신규프로그램이나 고차원의 서비스를 명령할 경우, 주는 ~~관련~~ *해당* 지방정부에게 ~~관련~~*해당* 프로그램이나 고차원 서비스 등의 비용 환급을 위한 보조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의회가 다음 규정안에 대한 ~~관련~~ *해당* 보조기금을 제공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경우는 제외됩니다:

~~(a)~~

(1) 관련 지방기관이 입법 명령을 요청할 경우~~;~~ .

~~(b)~~

법안 1A *(계속)*

(2) 신규 범죄를 정의하거나 범죄의 기존 정의를 변경하는 법안; ~~또는~~ .

~~(c)~~

(3)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입법 명령 또는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법률을 최초로 시행하는 행정명령이나 규제.

(b) (1) 제 (2)목의 규정을 제외하고, 2005-2006 회계년도와 이후 모든 회계년도에, 지방정부의 명령 이행 비용이 법에 의거해 전년 회계년도에 결정돼 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과 관련해, 주의회는 예산법에 따라 미지급에 대한 완전환급금액을 전용하거나 법이 명시하는 방식으로 예산법 회계년도에 명령 적용을 유예합니다.

(2) 2005-2006이전에 지급되지 않으며 2004-2005 회계년도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지급청구에 대해서 해당 금액은 법 규정에 의거해 수년에 걸쳐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된 재산세 세수는 지방정부의 신규프로그램이나 고차원 서비스 등의 비용을 환급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4) 본 호는 시와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에만 적용됩니다.

(5) 본 호는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공무원이나 퇴직자 또는 지방정부 공무원단체에 절차적 보호나 실체적 보호, 권리, 혜택, 고용지위 등을 제공하거나 인정하는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미래와 현재, 과거 지방정부 근무 경력에 근거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며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본 항에 의거해 명령을 구성합니다.

(c) 신규프로그램이나 고차원 서비스 등에 관한 명령은 종전에 완전 또는 부분 재정책임이 주에 귀속됐던 의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당 완전 또는 부분 재정책임을 주의회가 주에서 시와 카운티, 특별 구역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 캘리포니아 주민은 2004년 11월 2일 일반선거 당일에 법안 65의 본 법안과 납세자공공안전보호법 (이하부터 법안 65)이 세수와 주 명령 이행 비용 환급 문제등을 포함해 지방정부에 포괄적이며 상충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해 공표합니다. 본 법안이 법안 65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본 법안과 법안 65가 모두 승인되고, 본 법안이 법안 65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획득할 경우, 본 법안이 법안 65을 완전 대체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본 법안과 법안 65이 모두 승인되고 본 법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획득하면, 법안 65의 어떤 조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안 65

본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II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됩니다.

본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고 신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삭제되는 현 조항은 ~~취소선~~으로 표시하고 관련 신규 조항은 새로 추가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시합니다.

법률안

지방납세자공공안전 보호법

제1항. 소제목

캘리포니아 헌법의 본 수정안은 지방납세자공공안전 보호법으로 명명합니다.

제2항. 확정 및 목적

(a) 캘리포니아 주민은 치안과 화재예방, 비상사태와 외상 치료, 공공보건, 도서관, 형사사법, 도로 및 거리 유지 등을 포함하는 주요 지방서비스에 지방세금을 사용하기 위해 지방세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회복이 중차대한 일임을 확인합니다. 이들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기금 조성은 캘리포니아 전 주민의 안전과 복지, 삶의 질에 필수적입니다.

(b) 수 년간 주의회는 지방정부의 지방세금을 회수해 주가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주의회는 매년 수 십억 달러의 지방세금을 회수함으로써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지역 관련 비용과 세금을 인상하거나 주요 지방서비스 제공을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c) 주의회의 지방세금 회수는 치안과 화재예방, 응급 및 외상 치료, 공공보건, 도서관, 형사사법, 도로 및 거리 유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 능력을 저해합니다.

(d) 캘리포니아주민은 지방세금 회수의 폐해와 정부예산관련 주요 결정에 대한 유권자 감시감독의 중요성을 직시한 가운데 예산변경에 대한 투표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한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의거해 지방정부의 지방세금을 회수하는 주정부 행동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합니다.

(e) 지방납세자공공안전보호법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주요 지방서비스 지원에 쓰이는 지방세수를 주정부가 회수하는 행동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f) 지방납세자공공안전보호법은 주가 지방정부에 신규 프로그램 이행이나 프로그램 확대를 명령할 경우, 주가 이 프로그램 이행비용을 해당 지방정부에 환급해 주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g) 지방납세자공공안전보호법은 학교기금법과 법안 98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제8항)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h)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본 법안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본 법안에 명시된 대로, 주의회가 지방정부 통제하에 있는 지방세금을 회수하기 앞서 유권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지방세금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에만 사용되야 합니다.

(3) 주가 신규 프로그램이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책임 확대를 명령할 경우 주의회는 지방정부에 해당 비용을 환급해 줘야 합니다.

(4) 주의회가 지방정부에 주 규정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환급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3 항. 제XIII E 조가 캘리포니아 헌법에 추가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XIII E조

지방납세자공공안전법

제1항. 주 유권자의 승인 필요

(a) 아래 재원이나 재원 일부를 지방정부에서 환수하는 주의회법이 발효하기 앞서 본 항 규정에 의거해 유권자의 과반수 표결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1) 주의회가 지방재산세 배분 권한을 행사할 때 지방정부의 지방재산세 비례할당금을 삭감, 정지, 또는 연기하거나, 주의회가 특정 지방정부에 지방재산세를 주나 주기금, 또는 다른 이행당사자 지방정부의 동의없이 다른 지방정부에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방정부기준년도 기금을 동일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삭감, 지연 또는 정지하는 경우.

(3) 지방판매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거나 지방판매세 배분방식 변경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4) 2003년 지방정부지급유예금을 삭감, 정지 또는 지연하는 경우.

법안 65 *(계속)*

(5) 적용이 유예된 브래들리-번스 균일지방세 및 사용세법을 2003년 법률 제162절의 규정 추가에 따라 재정세수법 제97.68항의 규정에 의거해 발효시키지 못한 경우나 판매세율이 유예된 동안 재정세수법 제97.68항이 규정한 지방정부의 재산세 할당을 줄이는 경우.

(b) 본 항에 의거해 유권자 승인이 필요한 법안은, 선거인에 회부되기 전에 예산법 제정 절차와 동일하게 주의회 표결로 승인돼야 하며, 제(c)호 규정에 의거해 차기 주 광역선거에서 유권자가 다수결 표결로 승인하기 전에는 해당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 본 항에 의해 선거가 필요할 경우, 주 총무처 장관은 선거인에게 다음 질문을 제출할 것입니다: "지방세수에 영향을 주는 [___법 ___절] 관해 주의회가 취한 조치를 승인합니까?"

제2항. 정의

(a) "지방정부"는 시, 카운티, 시와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을 의미합니다.

(b) "지방정부 기준년도기금" 은 재정세수법 제2편 제5장 (제10701항 이하) 의 규정에 의거해 2002–2003 회계년도에 배분되는 재정세수액을 의미하고, 재정세수법 적용대상 차량의 평가가치 변화에 근거해 매년 조정됩니다. 재정세수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가 폐지되는 경우, 본 기금은 제XIII B 조의 규정에 의거한 계산방식에 따라 1인당 개인 소득 변화율과 동등한 비율과 인구변화에 의해 매년 7월 1일 조정됩니다.

(c) "2003년 지방정부지급유예금"은 2003년 8월 11일에 효력을 발생한 재정세수법 제10754항 제(a)호 (3)목 (D)하위목에 명시된 일반기금에서 지방정부로 전환되는 세수액을 의미합니다.

(d) "지방재산세"는 제XIII A 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의회 재산세 배분권한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부동산과 유형개인자산에 대한 2003년 1월 1일 종가세 방식의 비례할당액을 의미합니다. "지방재산세"는 제XVI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부동산과 유형개인자산에 대한 종가세 방식의 할당액을 의미합니다.

(e) "지방판매세"는 2003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재정세수법 규정에 의거해 (재정세수법 제2편 제1.5장 (제7200항 이하)) 브래들리-번스 균일지방세 및 사용세법 규정에 따라 시, 카운티, 시와 카운티에 부과되는 판매세와 사용세를 의미합니다.

(f) "특별구역"은 일반법이나 특별법에 의거해 형성된 주 기관으로 특정 지역범위안에서 행정업무나 독점적 업무를 수행하며 재개발기관은 이에 포함되지만 학교구역과 지역대학, 카운티 교육사무국은 제외됩니다.

(g) "주"는 캘리포니아주를 의미합니다.

제3항. 임시법안

(a) 본 법안 ("임시법안") 의 발효 시점이나 이후에 제정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유권자 승인이 필요하며 2003년 11월 1일과 본 호 발효 시점사이에 제정된 법령이나 부속 법령의 시행과 효력은 제1항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 법안 발효시점 이후 실시되는 첫번째 주광역 선거에서 임시법안이 승인되는 시점까지 유예되며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임시법안이 유권자 투표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임시법안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b) 임시법안이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면, 유예기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임시법안이나 주의회 별도 법안이 임시법안 적용대상 세수와 동등한 기금을 관련 지방정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할 경우, 임시법안은 이 유예기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c) 주의회가 제정하고 2003년 11월 1일과 본 호의 발효시점 사이에 유권자가 승인하는 법안은 본 항이 명시한 임시법안이 아닙니다.

제4항. 캘리포니나 헌법 제XIII B 조 제6항이 추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항. (*a*) 주의회나 주 기관이 지방정부에 신규 프로그램이나 고차원 서비스 등의 이행을 명령할 때, 주는 해당 지방정부에 해당 프로그램이나 고차원 서비스 등의 이행 비용 환급을 위한 보조기금을 매년 제공해야 합니다. 단, 주의회가 다음 규정안에 대한 보조기금을 제공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경우는 제외됩니다:

~~(a)~~ *(1)* 지방기관이 주의회 규정안을 요청할 경우 ~~;~~ .

~~(b)~~ *(2)* 신규 범죄를 정의하거나 범죄의 기존 정의를 변경하는 법안~~; 또는~~ .

~~(c)~~ *(3)*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입법 명령 또는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법안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또는 규제.

(b) 본 항에 의거한 연간보조금은 법률, 규제 또는 명령의 발효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또는 본 항 규정에 따라 보조기금 요구 최종판결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180일이내에 신규프로그램이나 고차원 서비스 등을 명령하는 주 공무원이나 주 해당기관이 지방정부에 전달합니다. 본 항 목적에 의거해, 주의회, 주기관 또는 주 공무원이 신규프로그램이나 고차원 서비스나 종전에 없던 서비스 등의 이행을 명령하거나 규정서비스 횟수와 기간, 서비스 수혜자수 등을 늘리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 완전 또는 부분 재정책임을 지방정부에 전환시킵니다.

(c) 보조금 환급 청구가 이뤄지는 회계년도에, 주의회가 제(a)호가 규정하는 완전환급을 위한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거나, 환급청구 신청이후 차기 회계연도에 주 예산법 일부로 완전환급을 위한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는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주의 명령을 계속 이행. 지방정부는 명령 이행 비용에 대한 환급금을 차후 배정과 보조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호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회계년도 전 기간이나 일부 기간에 명령 이행을 중단. 지방정부는 주의회가 제(a)호가 규정하는 완전환급을 위해 보조금을 배정하는 회계년도까지 회계연도 전 기간이나 일부 기간에 명령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명령을 이행한 회계년도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환급금을 차후 배정과 보조금을 통해 받을 것입니다.

본 호는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공무원이나 퇴직자에게 보호, 권리, 혜택, 고용지위 등을 제공하거나 변경하는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에게 미래, 현재, 과거 지방정부 근무경력에 근거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며 직접 관련된 절차적 권리나 실체적 권리를 제공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조항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는 본 호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d) 본 항의 목적에 의거해, "명령"은 주의회, 법정, 주규정안의원회, 또는 지명후계자가 본 항의 규정에 의거해 환급을 요구한 법률, 조치 또는 주기관 명령을 의미합니다.

제5항. 해석

(a) 본 법안은 치안, 화재예방, 응급 및 외상구조, 공공보건, 도서관, 형사사법, 도로와 거리 유지 등 지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정부에 적정기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본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의미합니다.

(b) 본 법안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하는 법률에 의해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A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종가세 부과 방식의 부동산세 배분을 변경할 수 없지만 주의회가 본 법안 규정에 따른 배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c) 본 법안 제3항 추가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E조 제3항 규정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E조 제1항 규정은 본 법안의 발효시점 시점이나 이후의 모든 법에 적용됩니다.

제6항. 본 법안 조항이나 개인 또는 상황에 해당 조항 적용이 관할 지역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이 날 경우, 이 무효판결은 다른 조항이나 이 조항 적용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 날짜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04 년 10월 4일
부재자 투표 우편 신청 개시일

2004년 10월 18일
선거인 명부 등록 마감일

2004년 10월 26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에 부재자 투표 신청서 접수 마감일

투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04년 11월 2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 사무소에 부재자 투표 직접 신청 마감일

2004년 11월 2일

선거날입니다!

www.ss.ca.gov

투표소 위치를 잘 모르십니까?

정확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www.ss.ca.gov

다음의 경우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십시오:

- 투표소 위치 확인
- 캠페인 기부금 조사
- 생방송 선거결과 시청
- 부재자 투표 정보 입수
- 후보자 명단 열람

부재자 투표 절차

모든 등록 유권자는 부재자투표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는 대신 유권자는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선거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부재자투표를 신청하려면 각 선거일 이전에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샘플 투표자료에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거 당일 29일 이전부터 7일 이전 사이에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한 신청서나 서신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나 서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유권자 등록 카드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이름과 거주지 주소
2. (현 주소가 등록된 주소와 다를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가 우송될 주소
3. 부재자투표로 투표할 해당 선거명과 날짜
4. 날짜와 서명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담당공무원이 처리하면 규격화된 투표용지가 해당 유권자에게 우송될 것입니다.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동봉된 봉투에 넣고 봉투에 모든 필수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부재자 투표용지는 다음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선거관리담당공무원에게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선거 당일날 투표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 카운티 선거 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적으로 허용된 제 3자(본인과 동일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이나 친척)에게 본인을 대신해 투표용지를 제출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제출방법에 상관없이, 투표용지는 반드시 선거당일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8시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늦게 도착하는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됩니다.

해당 선거관리담당공무원이 유권자의 부재자투표용지를 접수하면, 부재자투표 우송봉투에 기재된 유권자 서명과 투표등록카드에 있는 서명을 비교해 합법적인 공식 유권자인지를 결정합니다. 유권자 투표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용지는 해당 봉투에서 분리 보관되며 투표용지는 다른 투표용지와 마찬가지로 무기명 기밀상태로 유지됩니다.

장기부재자 우편 투표자 신청 방법:

유권자는 **장기부재자 투표 지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제3201장). 장기부재자 유권자는 각 선거 때마다 별도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제공받습니다. 차기 선거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담당공무원에 문의해 장기부재자 우편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담당공무원 연락처는 **www.ss.ca.gov/elections/elections_d.htm** 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모든 카운티 선거관리담당 공무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retary of State
1500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FIRST CLASS MAIL
U.S. POSTAGE
PAID
SECRETARY OF
STATE

my VOTE counts

일반 선거

다음 언어권에 해당하는 유권자 정보 안내서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아래로 전화주십시오:
English/영어: 1-800-345-VOTE (8683)
Español/스페인어: 1-800-232-VOTA (8682)
日本語/일본어: 1-800-339-2865
Việt ngữ/베트남어: 1-800-339-8163
Tagalog/타갈로그어: 1-800-339-2957
中文/중국어: 1-800-339-2857
한국어: 1-866-575-1558

www.voterguide.ss.ca.gov

유권자 정보 공식 안내서

추가 자료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주의회는 주와 카운티가 성이 동일한 유권자가 2명 이상 거주하는 주소지에는 유권자 안내서를 한 부만 송부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1-866-575-1558로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K